

[04]월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간호사

사업장명: 국가유산진흥원 한국의집

* 상태보고서는 사업주(관리책임자)가 선람하여 내부결재 후 신속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1. 보건관리상태

방문일자: 2026-04-14

사업자 현황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비제조업			
	업종분류: 사적지 관리 운영업									
근로자현황	총 근로자수 : 56명					입사자수		퇴사자수		
전 월	56명		사무직: 남 4명 / 여 3명		사무직 외: 남 21명 / 여 28명		0명		0명	
당 월	56명		사무직: 남 4명 / 여 3명		사무직 외: 남 21명 / 여 28명		0명		0명	
산업재해 발생현황	총 재해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업무상질병 재해		재해율(%)	
전 월	0명		0명		0명		0명		0	
당 월	1명		0명		1명		0명		1.79	
연누적현황	1명		0명		1명		0명		1.79	

2. 업무수행내용

◎ 사업장 관리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보건관리상태)				지도내용(개선요건)
	개선	진행	미개선	미해당	
안전·보건체제 관리		○			[안전보건체제관리_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확인 : 대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확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 김동하 본부장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일: 2021.08.01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보수) : 2024.06.19 보수교육 이수함 보수교육 이수기한 안내 및 지도 2025.12.19 ~2026.12.19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적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체제관리_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정 확인: 홍혜진 실장님 2) 관리감독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적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관련 1의2.(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가.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해야함 나. 채용시교육 : 8시간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이상 라. 특별교육 : 16시간이상(단기간, 간헐작업 2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해당 (16시간)

안전·보건교육 관리		○		[안전보건교육관리_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적 사항 지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 사무직종사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5-77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보건교육관리_채용시교육] 1. 채용 시 교육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적 사항 지도 1) 채용 시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해당 시기 :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5-77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회의 결과를 사내게시·사내방송·자체정례조회 등의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주지하도록 지도

◎ 작업환경 관리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보건관리상태)				지도내용(개선 의견)
	개 선	진 행	미 개 선	미 해 당	
작업환경측정 관리				○	작업환경측정 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비대상 사업장

◎ 건강 관리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보건관리상태)				지도내용(개선 의견)
	개 선	진 행	미 개 선	미 해 당	
재해자 관리		○			[산업재해 발생확인] 1) 산업재해발생확인 ① 성명 : 이재빈(남/89.11.10) ② 발생일시: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11시 10분 ③ 발생장소 : 한국의 집 지하 1층 조리실 ④ 재해관련 작업유형 : 조리 ⑤ 재해발생당시상황 : 신메뉴 시식을 위한 솥을 준비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뜨거운 솥의 달구어진 손잡이를 잡다가 부상을 당함 ⑥ 상병명 : T310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2도 화상(우측 수부) ⑦ 산업재해발생보고일 : 2026년 3월 18일 ⑧ 요양결정일 : 2026년 3월 5일 ⑨ 업무복귀일 : 미정 ⑩ 재발방지계획 확인 : 자체 안전교육 실시 등 2) 위험성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지도(산안법 제 36조,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등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관련 서류보존에 관한 사항 지도(산안법 57조2항, 시행규칙 제 72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3년보존) -(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법적 사항 지도]
건강진단 관리		○			건강진단 (일대상/특비대상) (일반건강진단) 실시중 : 2026년1~12월 / 지정병원-한신메디피아의원에서 실시중 일반건강검진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실시 지도함 (특수건강진단) 비대상
재해자 관리		○			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신진우님 산업재해조사표 2026.04.12 제출 확인함 2)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또한 추가 재해 방지를 위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관리		○			근로자건강증진운동관리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시 기업건강증진지수평가결과를 반영하여 P-D-C-A(계획-실행-점검-개선)를 기반으로 구축계획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		기업건강증진지수평가 실시 * 기업건강증진지수평가란 사업장 건강증진요구도 대비 활동도를 평가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자료 * 근로특성 및 건강실태 관련 사항 확인요청 장년(50세이상)/교대(야간)/근골부담작업/근골산재/고객응대업무/뇌심질환산재/일반건강진단미수검/일반질환병요관찰, 유소견자 근로자 명수 등 사업장 건강관련 실태 조사 실시 후 기업건강증진지수평가 결과 전달예정
-------------	--	---	--	---

3. 종합의견 위탁업무수행(총괄)(세부업무내용 및 개선의견)

사업장보건관련 세부사항 (1) 사업장 보건관련 자료보급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관리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강상담 및 간이검사 실시 - 한류CS팀 3명, 한류사업기획팀 3명, 한류진흥실 1명, 한식연구팀 2명 (혈압, 혈당등 기초검사 실시) - 건강상담실시 현황 별도 파일 보관관리중임 (필요시 제공, 3년 보존) - 근로자 상담 시 특이사항 없음 (3) 기업건강증진지수평가 실시중임-추후 결과 전달예정					
방문일자	2026-04-14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직위: 대리 성명: 정준호 (인)	보 건 관 리 자	자격: 간호사 성명: 함서영 (인)